인천광역시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92호

# 인천광역시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이사장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보 수** : 공단 규정(내규)에 따라 구청장과 경영성과 계약에 의한 연봉제 적용
4. **주요직무**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짐
   ○【붙임1】직무수행요건 참고
5.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무원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임원(등기부 등재)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선임연구위원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위 각호 사항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세부내용【붙임2】참고

## 6. 접　　수

○ 접수기간 : **2026. 11. 10.(화) ~ 11. 30.(월)**

○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jmpss.or.kr)⇒알림/홍보⇒채용안내⇒채용공고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접수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방　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축항대로296번길 81, 국민체육센터 3층 경영지원팀

▸ 평일 09:00 ~ 18:00

## 7. 제출서류(공고문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지원서(사진부착) 1부【서식 1】

○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경영철학, 경영경험 등 기술) 1부【서식 2】

○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1부【서식 3】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 4】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자격증(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각 1부

※ 자격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8.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심사(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합격자 발표 : 2026.12.04.(금) 홈페이지 공고(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포함)

○ 2차 심사(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화합 및 직원친화, 윤리관 등 심사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지원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채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80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반환 예외 대상은 제외합니다.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우리 공단은「공직자윤리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퇴직공직자의 경우「공직자윤리법」의 취업관련 절차를 유념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초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 수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만, 응모자 수 부족으로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원자의 응시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재공고 시 안내합니다.

마. 최종 임원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며, 최종 임명은 임명권자(구청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제물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32-850-14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직무수행요건

## 1. 담당직무

###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짐

(직제규정 제5조, 임원인사규정 제5조)

### 나. 대내·외적관계 관련 업무

○ 공단 담당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공단 내·외 집단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

○ 대외적으로 구·의회, 관련 부서 및 타 공기업·민간기업, 시민단체, 고객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고, 대내적으로는 직원 상호간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 다.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업무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환경의 변화 분석 및 예측과 기업가적 안목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구민)만족 도출

### 라. 조직 내부 관리 관련업무

○ 이사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역량을 제고

○ 사건·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 마. 기타 관련업무

○ 신규 사업 영역의 개척과 선진 경영기법의 발굴 · 접목으로 조직 발전을 도모

○ 갈등과 분쟁의 사전 해결을 위해 노력

## 2. 직무수행요건

###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업무

○ 차원 높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

○ 시설물 관리 및 공단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 나. 기타 수행능력 요건

| 필요한 주요능력 | 요구되는 능력수준 |
|---|---|
| ① 개혁성 | 크게 요구 |
| ② 리더십 | 상당히 요구 |
| ③ 기업가적 능력 | 크게 요구 |
| ④ 전문성 | 크게 요구 |
|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 크게 요구 |
| ⑥ 비전 제시 능력 | 크게 요구 |
|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상당히 요구 |
| ⑧ 청렴도 | 크게 요구 |
| ⑨ 도덕성 | 크게 요구 |
| ⑩ 준법성 | 상당히 요구 |

○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 경력

- 기업경영 및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 미래지향적 비전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 경영혁신으로 공단 위상을 제고하실 분
- 기업경영과 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가지신 분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능력 : 국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

【붙임 2】

# 결격사유(지방공기업법 제60조)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